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유형별 주요내용 및 개선대책 <2>

김입순, 최원욱, 한상욱

아태환경·경영연구원

목 차

1. 서론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과 현행제도

가. 환경영향평가 단일제도하에서의 관련법령의 변천

- 1) 환경보전법
- 2) 환경정책기본법
- 3) 환경영향평가법

나. 환경영향평가 단일제도하에서의 주요내용의 변화 및 성과

- 1) 환경영향평가법의 기본체계
-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
- 3) 연도별·대상사업별 협의실적

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 제도

- 1) 통합평가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변경 사항
- 2) 통합평가법의 법령체계 및 영향평가절차
- 3)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등
- 4)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 5)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등
- 6) 협의내용의 관리 등

3. 환경정책기본법 및 개별법령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도입 배경 및 전망

- 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및 변천
-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변천

다. 환경정책기본법령 체계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 1) 환경정책기본법령 체계
- 2) 사전환경성검토의 유형
- 3)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협의실적

라.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주요내용

- 1)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의 분류
- 2) 환경정책기본법령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
- 3) 개별법령에 의한 환경부와의 협의대상 행정계획

마. 건설사업의 환경성조사·검토지침

- 1) 재정경위 및 기본방향
- 2) 건설사업의 환경성 조사·검토제도

4.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위상변화와 지방제도화의 요구증대

나. 지방환경영향평가제도화에 따른 문제점 및 선결 과제

- 1) 지방환경영향평가제도화에 따른 문제점

- 2) 지방환경영향평가제도화에 따른 선결과제

- 3) 국가제도와 지방제도의 차이점
- 4) 지방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다. 지방환경영향평가의 제도화 방향

- 1) 평가대상의 설정
- 2) 평가항목의 선정
- 3) 환경영향평가절차
- 4) 평가담당주체

5. 지속성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전략환경평가

가. 정책의 계층적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

나. 환경영향평가의 한계성과 SEA의 필요성

- 1) 연계된 개발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영향에 대한 고려의 한계
- 2) 사업대안의 검토 제약
- 3) 누적영향의 간과
- 4) 복수의 소규모 사업과 규제 관련한 사업에 대한 통합적 관리의 한계

다. 전략환경평가의 유형 및 접근방법

라. 전략환경평가의 도입실태와 기대효과

- 1) 세계 주요국가의 도입실태
- 2) 전략환경평가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6.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책방안

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 1) 국내외 제도의 주요 내용
- 2) 국내외 제도의 주요 차이점
- 3) 외국제도에 비해 본 국내제도의 문제점
- 4) 국내제도의 개선을 위한 과제

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근원적 개선대책
-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운영상 보완대책
- 3) 건설사업의 환경성조사·검토지침과의 조화

다. 사전환경성검토도구로서의 전략환경평가의 도입

- 1) 사전환경성검토와 전략환경평가의 차이점
- 2) 사전환경성검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략환경 평가의 도입
- 3) 전략환경평가도입에 따른 기반이념의 구축 및 전제조건
- 4) 전략환경평가제도화에 따른 유의사항

7. 결론

3) 연도별 · 대상사업별 협의실적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계획을 수립 ·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경제성 ·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하나의 계획기법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개발 사업계획의 결정시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환경훼손과 환경오염이 점차 심화되게 되자 경제성, 기술성 외에 환경보전을 주요 요소로 하여 사업계획의 합목적성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의 시행을 담당할 중앙환경행정조직인 환경청이 1980년 설립되고 1981년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에 관

한 지침이 고시되므로서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되게 되었다. 2000년 말까지 2153건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중앙환경부서(환경청, 환경처, 환경부) 또는 지방환경청과 협의하였다. 사업유형별 · 연도별 협의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표 3-2 참조).

다.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

1) 통합평가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변경 사항

그동안 환경 · 교통 · 재해 · 인구 등 영향평가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별도로 시행됨으로써 동일한 사업

이 2가지 이상의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절차의 중복과 비용의 과다 지출 등으로 사업자에게 시간적 ·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에서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7. 4. 23일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통합 · 개선을 경제 활성화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1998. 2. 12일에는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정한 후 2년여에 걸친 통합작업 끝에

(표 3-2) 사업유형별 · 연도별 평가협의 실적 ('82 - '00)

대상사업	연도별 협의실적	계	'88이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2,153	327	120	212	210	127 (20)	149 (98)	115 (74)	161 (110)	151 (99)	151 (106)	155 (115)	154 (104)	121 (82)
도시개발	소계	385	71	27	44	38	21	21	17	27	36	18	25	23	17
	토지구획	88	2	6	9	11	6	3	5	7	8	8	12	5	6
	택지개발	266	65	21	35	25	12	14	8	16	27	5	12	17	9
	기타	31	4	-	-	2	3	4	4	4	1	5	1	1	2
공업단지조성	245	35	19	37	26	28	14	18	20	16	12	8	7	5	
에너지개발	소계	317	120	24	36	59	5	4	11	22	15	12	3	3	3
	발전소등	70	12	4	5	6	4	-	6	10	7	8	2	3	3
	진원개발	247	108	20	31	53	1	4	5	12	8	4	1	-	-
항만건설	109	4	2	5	5	8	7	8	8	16	10	20	12	4	
하천 · 수자원	47	8	1	3	3	9	5	2	3	2	3	4	2	2	
산지개발	18	-	-	-	-	-	3	5	1	1	5	1	2	-	
매립 및 개간	68	16	9	10	16	1	2	1	1	2	5	1	2	2	
체육시설	135	7	24	45	23	5	4	3	-	-	7	6	6	5	
관광지개발	150	33	1	8	11	12	12	6	15	10	18	7	3	4	
공항건설	21	2	3	3	4	1	1	-	1	1	1	1	3	-	
철도건설	73	4	2	4	9	5	6	4	2	8	5	3	8	13	
도로건설	419	8	2	8	8	13	7	29	42	40	39	64	61	58	
환경기초시설	소계	155	19	6	9	8	19	23	11	19	4	13	10	7	7
	하수처리	62	4	2	6	4	12	15	4	1	1	2	4	4	3
	폐기물	81	11	4	2	2	7	8	7	18	3	8	5	2	4
	분뇨처리	12	4	-	1	2	-	-	-	-	-	3	1	1	-
국방군사시설	11	-	-	-	-	-	-	-	-	-	3	2	5	1	

비고 : ()은 지방환경청의 협의실적으로 계에 포함됨.

1999. 12. 31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제정·공포되고 2001. 1. 1일부터 시행되었다.

통합의 기본취지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기본으로하여 교통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를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여 평가절차를 통일하고 영향평가서 작성을 단일화하는 것 이었다. 그러나 새로이 제정된 통합영향평가법은 하나의 사업이 2가지 분야 이상의 평가대상이 될 경우 개별법에 따라 각각 평가서를 작성하고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했던 종전과 달리 하나의 통합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고 평가절차가 통일됨으로써 절차의 중복에서 오는 낭비와 비능률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비추지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종전과 다름없이 별개의 평가서를 작성하게 되므로써 기존제도의 임시적인 봉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통합영향평가법이 제정되면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된 내용과 달라진 사항은 공동평가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의 영향평가 대상의 구체화한 사항, 영향평가 대행계약에 관한 사항, 승인기관의 사후관리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평가서 작성의 충실화와 협의내용의 이행확보를 위한 벌칙 등을 강화한 내용으로서 이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해안에서 광물과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광업법상 단위광구의 개념을 도입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영향평가대상의 범위를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거나 영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업을 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3) 사업자가 평가대행자에게 영향평가를 대행시키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평가대행비용을 명시하도록 함.

(4) 승인기관의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승인

기관으로 하여금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 결과를 다음해 1월 30일까지 협의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5) 평가서 작성의 충실화와 협의내용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서 허위작성에 대한 벌칙을 종전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협의완료전 사전공사를 할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의 벌칙규정 및 평가서 부실작성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징수를 할 수 있도록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평가서 허위작성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고(1차 : 업무정지 6월, 2차 : 등록취소) 부실평가서 작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함(3번 위반시 등록을 취소). 그러나 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과 영향평가 대행계약에 관한 사항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또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통보받은 협의기관이 이를 종합하여 공표하므로써 사후관리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받게 될 것인바, 백서의 형태로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의 추가가 요청되고 있다.

2) 통합평가법의 법령체계 및 영향평가절차

(1) 통합평가법체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은 6장 4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법령인 시행령은 3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행규칙은 행정자치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공동부령과 환경부 단독부령의 2개 부령이 있다.

통합평가법의 체계는 총칙, 평가서의 작성 등, 평가서의 협의 등,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보칙, 벌칙으로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법체제로 구성된 통합평가법과 동시행령·동시행규칙의 각 조문의 제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3-3 참조)

〈표 3-3〉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구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시행규칙 제정 2002.12.30, 행정자치부령 제115호 환경부령 제103호, 건설교통부령 제268호
근거	제정 1999.12.31 법률 제6095호	제정 2000.12.30 대통령령 제17089호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 제정 2000.12.30 환경부령 제102호
주요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영향평가대상사업 등) 제2장 평가서의 작성 등 제5조(평가서의 작성) 제6조(의견수렴) 제7조(영향평가의 대행) 제8조(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제9조(결격사유) 제10조(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제11조(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제12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13조(청문) 제14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제15조(평가대행실적의 보고 등) 제16조(영향평가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3장 평가서의 협의 등 제17조(평가서의 협의 등) 제18조(평가서의 보완) 제19조(평가서의 검토 등) 제20조(협의내용의 통보 등) 제21조(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제22조(이의신청) 제23조(평가서의 재협의 등) 제24조(재협의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 제25조(사업자의 의무) 제26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제27조(사업착공 등의 통보) 제28조(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제4장 환경영향평가의 등에 관한 특례 제29조(환경영향평가의 항목) 제30조(환경영향평가의 기준)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	제1조(목적) 제2조(영향평가대상사업 등) 제3조(시·도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제4조(평가서의 내용 등) 제5조(평가서초안의 작성) 제6조(평가서초안의 제출 및 공고·공람 등) 제7조(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제8조(설명회의 개최) 제9조(공청회의 개최) 제10조(주민의견수렴지역의 확대 등) 제11조(의견수렴 제외 교통영향평가대상) 제12조(평가대행계약) 제13조(평가대행실적 등의 공고) 제14조(평가서의 제출시기 등) 제15조(평가서의 보완) 제16조(전문가의 범위 등) 제17조(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8조(중요교통영향심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9조(지방교통영향심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0조(평가서 협의기간) 제21조(영향평가조정협의회의 구성 등) 제22조(이의신청) 제23조(재협의) 제24조(영향저감방안 검토시의 제출서류 등) 제25조(협의내용의 이행확인 등 통보) 제26조(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제27조(재평가의 사유 및 절차) 제28조(초과부담금과부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제29조(초과부담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제30조(기준초과 배출량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환경부령) 제2조(평가초안의 공람) 제3조(공청회개최결과통지서) 제4조(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제5조(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6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제7조(평가대행자의 등록등의 공고) 제8조(평가서 등의 보존) 제9조(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등) 제10조(행정처분기준) 제11조(평가대행실적의 보고 등) 제12조(평가서의 제출부수) 제13조(관리대장의 비치 등) 제14조(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지정통보) 제15조(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제2조(환경영향 조사결과와 통보)(환경부령) 제3조(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환경부령) 제4조(환경영향의 조사항목 등)(환경부령) 제16조(협의내용의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제17조(사업착공 등의 통보) 제5조(환경영향평가항목)(환경부령) 제6조(협의기준초과부담금의 납부통지서 등)(환경부령) 제18조(정관의 변경) 제1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부칙(공동부령) 제1조(시행일) 제2조(등록요건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구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시행규칙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환경부령)
주요 내용	제32조(재평가) 제33조(협의기준초과부담금) 제5장 보칙 제34조(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제35조(비밀업수의 의무) 제36조(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의 육성) 제37조(영향평가협회)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장 벌칙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제41조(양벌규정) 제42조(과태료)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법률의 폐지) 제3조(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평가대행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협의내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중전의 법률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환경영향평가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1조(연도별부담금 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32조(초과부담금의 납부통지) 제33조(초과부담금의 조정) 제34조(정수비용의 교부)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6조(과태료의 부과)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제3조(매장및표지등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특례) 제4조(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적용) 제5조(초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재협의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진행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부칙(환경부령) ①(시행일) ②(다른 법령의 폐지)

(2) 환경영향평가 관련규정

환경영향평가 관련규정으로는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협의,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사후관리,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등록 및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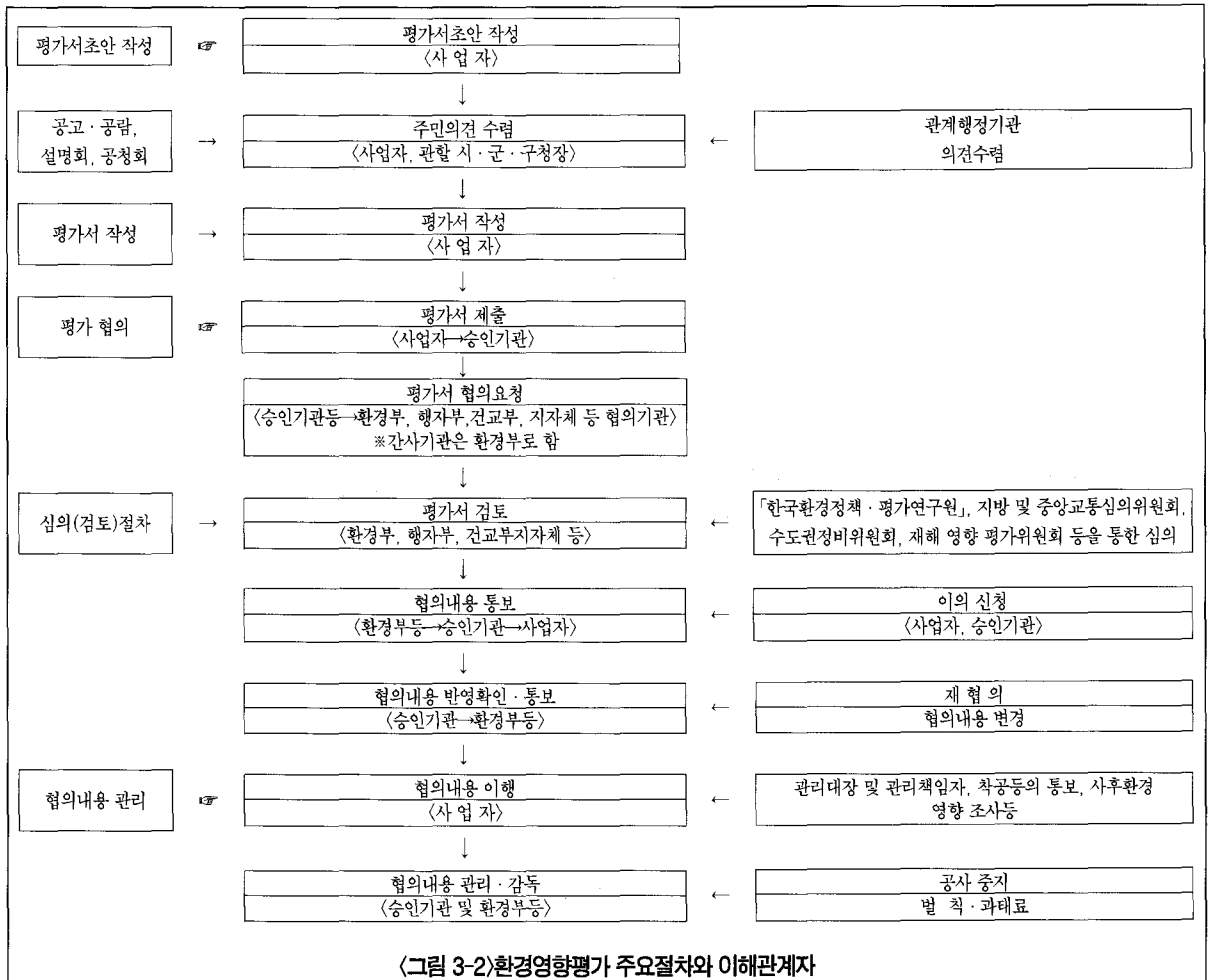
리 등에 관한 것 외에 환경영향평가 작성비용,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및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관한 규정등이 환경부고시, 예규, 훈령, 지침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3-4 참조).

〈표 3-4〉환경영향평가관련 제규정

구분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서검토및협의등에관한 업무처리규정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관리 에관한업무처리지침	환경영향평가대행자등록 및관리에관한업무처리지침	환경영향평가서작성비용 산정기준	협의기준초과부담금사무 처리규정
근거	환경부고시 제2001-7호 (2001.1.29 개정)	환경부예규제211호 (2001.5.3 개정)	2001.2.22 전면개정 (내부지침)	환경부예규제207호 (2001.1.13 전문개정)	환경부고시 제2001-29호(2001.3.2 전문개정)	환경부 훈령 제484호 (2001.2.12 개정)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검토 및 협의)	제1조(목적) 제2조(협의내용관리의)	I. 목적 II. 평가대행자의 등록	제1조(목적) 제2조(적용원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주요내용	제2조(정의) 제3조(환경영향평가대행자등의 명칭) 제4조(평가서의 내용에 관한 책임) 제5조(중점평가) 제6조(복합평가) 제2장 평가서초안작성 등에 관한 사항 제7조(평가서초안의 구성 등) 제8조(평가서초안의 작성에 관한 지침) 제9조(평가서초안의 분량등) 제10조(평가서초안의 제출) 제11조(평가서초안의 보완) 제3장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평가서의 구성등) 제13조(평가서작성에 관한 지침) 제14조(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제15조(지역개황조사) 제16조(의견수렴내용에 관한 사항) 제17조(환경현황조사) 제18조(영향의 예측 및 분석) 제19조(예측·분석에 따른 평가) 제20조(저감대책의 수립) 제21조(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 제22조(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제23조(대안의 비교) 제24조(평가서의 분량) 제25조(비밀에 관한 사항) 제26조(보완서의 제출) 제27조(자유의 보완) 제28조(협의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통보) 제4장 재협의 및 협의내용 변경 등 제29조(재협의시 평가서의 내용)	의절차 제3조(검토사항) 제4조(평가서협의 및 검토) 제5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토) 제6조(평가서 검토·처리규정) 제7조(평가서의 반려) 제8조(평가서의 보완) 제9조(사전공사사업장에 대한 평가협의) 제10조(협의내용의 결정 및 통보) 제11조(사전환경성검토및환경영향평가전문위원회의 심의) 제12조(평가서 초안의 검토) 제13조(환경관련 사업계획(승인) 제14조(재협의 등의 검토 등) 제15조(주관 협의 기관) 제16조(현장조사) 제17조(수당 등) 제18조(보고) 부칙	기본취지 제3조(조사대상사업) 제4조(조사기간) 제5조(합동조사 등) 제6조(조사계획수립) 제7조(조사시기 및 횟수) 제8조(조사내용) 제9조(조사방법) 제10조(협의내용 이행 사업자에 대한 조치 등) 제11조(조사결과에 관한 리 및 보고) 제12조(조사대상의 제외) 부칙	1. 등록요건 2. 등록절차 3. 등록신청 4. 접수 및 서류검토 5. 현지확인 6. 종합검토 7. 등록 Ⅲ. 평가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1. 등록사항의 변경절차 2. 검토방법 및 등록사항 변경 Ⅳ. 행정처분 1. 근거규정 2. 업무처리절차 3. 정보입수 및 위반사항 확정 4. 청문 등 의견청취 5. 행정처분 V. 지도·점검 1. 정기점검 2. 수시점검 Ⅵ. 행정사항 부칙	제3조(비용산정방식) 제4조(다른 기준 등의 준용) 제5조(직접인건비) 제6조(직접경비) 제7조(세경비) 제8조(기술료) 제9조(부가비용의 계산) 제10조(다른 업무에의 적용) 부칙 (별표1) 소요인력 산정 기준 (별표2) 사업규모에 따른 소요인력 할증표 (별표3) 평가항목별 조사내용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징수의 순위) 제2장 징수, 독촉 및 환급 제4조(초과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권자) 제5조(징수권의 임명 및 재정보증) 제6조(징수권자의 업무) 제7조(과과금액의 단순 계산 및 최저한) 제8조(납부고지서의 발부 및 서류송달) 제9조(납부고지서의 변경통지) 제10조(가산금) 제11조(중가산금) 제12조(독촉) 제13조(공매에 의한 징수) 제14조(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결 회등) 제15조(초과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등) 제16조(환급금의 지출 방법) 제3장 체납처분 제17조(체납처분시기) 제18조(체납자의 재산 및 행방조사) 제19조(회사정리법에 의한 계류중인 체납액의 정리) 제20조(행정소송 계류 중인 체납액의 정리) 제21조(교부청구 또는 참가 압류중인 체납액의 처리) 제22조(행정심판중인 체납액의 처리) 제23조(압류) 제24조(재산의 압류절차, 사용허가등) 제25조(압류재산의
	환경영향평가 조례지침 (2001. 5. 23 전면개정)		1. 목적 및 배경 2. 일반지침 가. 평가대상사업선정기준 (1)지역특수성에 대한 고려 (2)환경영향평가 취지에 부합 (3)단순규제수단이 아닌 종합적인 환경영향 저감 방안이 필요한 사업 (4)사전환경성검토와 중복회피 나. 평가절차 및 방법 등 (1)평가절차 (2)평가항목 (3)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조치 다. 조례규정 범위 및 사전협의 (1)조례규정의 범위 (2)조례안에 대한 사전협의 3. 세부지침 가. 평가대상사업			

주요내용	제30조(협의내용변경계획서의 제출) 부칙 별표 (별표1)대상사업별 주요평가항목 (별표2)평가항목별 주요평가내용 (별표3)평가서 초안 기재요령 (별표4)평가서 기재요령 (별표5)사후환경조사계획 작성방법	나. 평가서의 작성 다. 주민의견 수렴 라. 평가협의 마. 협의내용변경 등 바. 이의신청 사. 협의내용 반영여부 확인 사업계획 승인 아. 협의내용의 이행 및 관리감독 자. 사후환경영향조사	매과) 제4장 결손처분 제26조(체납처분의 중지 와 그 공고) 제27조(결손처분) 제5장 보칙 제28조(장부의 기록·유지) 제29조(보고) 제30조(점검확인 의 실시) 제31조(준용규정) 부칙
------	---	---	--



〈그림 3-2〉환경영향평가 주요절차와 이해관계자

(3) 환경영향평가절차

환경영향평가가서초안의 작성, 주민의견 수렴, 평가서 작성, 평가서 제출, 평가서 협의요청, 평가서 검토, 협의내용 통보, 협의내용 반영확인·통보, 협의내용이행 및 협의내용 관리·감독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절차와 관련되는 주체를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3-2 참조).

3)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등

(1)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및 범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분야(종류) 및 세부사업(규모)에 따라 17개 분야, 62개 사업¹⁾으로 규정되어 있다(표 3-5 참조)

〈표 3-5〉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분야	세부사업 및 규모
가. 도시개발(11개)	○ 도시개발, 아파트지구개발 : 25만㎡ ○ 대지조성, 택지개발, 도시재개발, 학교 : 30만㎡ ○ 유통단지·공동집배송단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자동차터미널 : 20만㎡ ○ 기타 :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주차장(20만㎡), 시장(15만㎡), 운하), 하수종말처리시설(10만㎡/일)
나. 산업입지(6개)	○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중소기업단지,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 일단의 공업용지조성 : 15만㎡
다. 에너지개발(6개)	○ 전원개발, 전기설비: 발전소(1만KW, 댐 및 저수지 수반시 3천KW, 공장용지 내 3만KW, 태양력등 10만KW), 송전선로(345KV, 10km), 옥외변전소(765KV), 저탄장(5만㎡), 회차리장(30만㎡) ○ 광업(30만㎡), 해저광업, 송유관시설중 저유시설, 석유사업자 또는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저유시설
라. 항만건설(4개)	○ 어항시설 : 외곽(300m, 매립 1만㎡), 계류(매립 1만㎡), 기타(15만㎡, 매립수반시 3만㎡) ○ 항만(신항만)시설 : 외곽(300m, 매립 1만㎡), 기능(매립 1만㎡), 기타(15만㎡, 매립수반시 3만㎡) ○ 항만준설 : 10만㎡, 20만㎡(항로등 유지, 오염물질제거시 제외)
마. 도로건설	○ 도로(신설의 경우 4km(도시계획구역은 폭 25m, 개발제한구역 3만㎡ 포함), 확장의 경우 10km(2차선이상))
바. 수자원개발(2개)	○ 댐 또는 하구언, 저수지, 보 또는 유지 : 200만㎡, 2,000만㎡
사. 철도건설(4개)	○ 철도·도시철도·고속철도(1km), 삭도·케도(2km)
아. 공항건설	○ 공항개발 : 비행장, 활주로(500m), 기타(20만㎡)
자. 하천개발	○ 하천공사 : 10km
차. 개간·매립(2개)	○ 매립 : 30만㎡(항만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내 3만㎡) ○ 개간(간척 포함) : 100만㎡
카. 관광단지(6개)	○ 관광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온천 : 30만㎡ ○ 기타 : 도시공원(25만㎡), 유원지(시설면적 10만㎡), 자연공원(10만㎡)
타. 산지개발(3개)	○ 묘지((25만㎡), 초지(30만㎡), 기타(20만㎡)
파. 특정지역 개발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 -타. 하 및 더의 사업
하. 체육시설(5개)	○ 청소년수련시설·수련지구 : 30만㎡ ○ 체육시설, 경정·경륜시설, 경마장 : 25만㎡(스키장, 자동차경주장 포함)
거. 폐기물·분뇨처리시설(2개)	○ 분뇨처리시설(100t/일, 다만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는 제외) ○ 매립시설(30만㎡, 330만㎡ 다만 지정폐기물의 경우 5만㎡, 25만㎡), 소각시설(100t/일)
너. 국방·군사 시설(3개)	○ 국방·군사시설(33만㎡), 군용항공기지(비행장, 활주로(500m), 기타(20만㎡)), 해군기지(10만㎡, 다만 매립수반시 3만㎡)
더. 토석등 채취(4개)	○ 하천 및 연안구역(상수원보호구역내 2만㎡, 상류 5km내 5만㎡), 산림(10만㎡), 해안 광물(단위광구장: 강원·경북 2만㎡, 기타 3만㎡), 해안골재(25만㎡, 50만㎡)

1) 종전에는 17개 분야 63개 사업이었다. 통합평가법 시행령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폐지 및 도시개발법의 제정등 관계법령의 변경에 따라 기존 단위사업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 조성사업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통합내용을 반영하므로서 단위사업수가 62개 사업으로 됨.

한편 통합영향평가법은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과 유사하게 시·도가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 이상 확대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영 제3조제1항)

따라서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사업, 평가의 필요성, 해당사업에 대한 인·허가 실적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한다. 환경영향평가대상 범위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²⁾.

- 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라 함은 영 별표 1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에 규정된 승인등을 받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② 평가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의 확대로 영 별표 1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도달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영 별표 1. 비교 4).
- ③ 평가대상규모 이상이나 사업시행 당시 평가대상이 아니어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사업규모가 100분의 15 이상 또는 최소사업규모 이상 확대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은 사업이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확장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재협의) 또는 제24조(재협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의 절차에 따른다.
- ⑤ 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조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으로서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의 확장으로 영 별표 1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평가서의 작성, 협의 기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의 규정

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

- ⑥ 대상사업의 범위중 사업규모는 영 별표 1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에 정하고 있는 인·허가, 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규모를 말한다.
- ⑦ 하나의 사업이 영 별표 1의 “대상사업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2이상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 ⑧ 영 별표 1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이 하나의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연계·추진되는 경우 전체 사업계획에 대하여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⑨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에서 정하고 있는 승인등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비교 2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대상사업의 범위로 본다.
- ⑩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는 때에는 환경현황의 조사내용, 환경영향에 관한 분석 및 저감방안의 강구내용,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와 그 저감방안 포함)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⑪ 345kV 이상의 지상송전선로 설치사업에 대한 영향평가서에는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⑫ 댐건설사업에 수반하여 댐과 댐 사이의 도수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댐에 관한 영향평가서에는 도수로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⑬ 해안인 단위광구에서 2인 이상이 광물 또는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각인의 개발면적이 평가대상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면적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면 해당 사업자는 공동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집(2001. 5. 환경부발간, www.me.go.kr) 참조